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정수와 종류)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상임이사 50인 이하를 둘 수 있다.
부회장은 20인 이하, 이사는 100인 이하이고,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이하)
3. 감사 (2인이하)
4. 상임이사 (50인이하)
5. 이사 (100인이하)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전임회장 임기만료 전 60일 이내에 이사회 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 ④ 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본회 회장의 임기는 1월말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월말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본회의 타 직을 겸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심의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수행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꺼위)

① 회장이 꺼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업무(총회 소집 및 의장 직무 제외)를 대행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관 제 11조에 근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들 중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 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